

이태형 누수방지과 2018-07-12 10:51:17

# 상수도관로 누수복구에 관한 협약서

(하남시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2018.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하 남 시 장

이태형 누수방지과 2018-07-12 16:51:17

## 서울특별시와 하남시의 상수도관로 누수보수에 관한 협약서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하남시(이하 “하남시”라 한다)가 서울시내에 부설되어 있는 하남시 미사·감일공공 주택지구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에서 발생한 누수 보수와 그 보수비용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이하 “누수”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누수보수의 범위)** ①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부설되어 있는 하남시 미사·감일공공주택지구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에서 누수 등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누수를 보수할 수 있다.  
② 하남시가 수도물 공급을 위한 상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순찰 업무 중 발견한 누수 등은 서울시와 하남시가 협의하여 누수를 보수 한다.

**제3조(순찰 등 유지관리)** 하남시는 서울시내에 부설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의 일상적인 순찰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하남시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누수신고의 접수 및 보수)** ① 서울시가 직접 누수신고를 접수하거나, 하남시로부터 이첩 받은 누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하남시가 출동하여 현장조사 및 누수를 보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누수는 서울시가 하남시에게 누수보수 일시 등을 연락 하며, 하남시는 누수보수 현장을 입회하여야 한다.

③ 하남시의 사정으로 누수보수 공사현장을 입회하지 못하여도 서울시는 누수보수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5조(단수홍보 및 수계전환)** 단수가 수반되는 누수보수공사의 단수 홍보 및 제수밸브 조절은 하남시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보수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서울시는 누수보수를 완료한 후에는 누수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하남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는 제1항의 누수보수 비용을 서울시의 강동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한 수납 기관에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하남시가 제1항의 누수보수 비용을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에서 지정한 납부기한(30일 이내)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남시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33조(체납관리)의 연체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비용의 산출범위)** ①서울시가 시행한 누수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합산 산출한다.

1. 누수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서울시의 강동수도사업소장과 누수보수를 위하여 선정된 누수보수 업체와의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2. 누수보수 비용을 산출하는 설계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 작성 등)” 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도로포장복구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비용.
4. 기타 서울시와 하남시 간에 협의된 사항.

**제8조(준용)** 본 협약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 등원인자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서울시와 하남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서울시와 하남시가 협약의 필요성이 없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 일로부터 발생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18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하남시(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시 장 김 상 호 (인)